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하려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신고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일정한 경우 해당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856호, 2023. 12. 29. 공포, 2025. 3. 30. 시행)됨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는 도매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정당한 이유 없이 협정 상대방에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 협정 상대방에게 협정의 이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및 종전의 협정에서 정한 도매제공 대가의 산정 주기를 협정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신고의 반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 · 구조문대비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8(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 신고의 반려)

① 법 제38조의2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매제공의무사업자(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도매제공의무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도매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협정 상대방에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
2.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협정 상대방에게 협정의 이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3.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동일한 협정 상대방과 체결하여 이미 신고된 협정에서 정한 도매제공 대가의 산정 주기를 협정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변경하는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반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2025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9조의8(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 신고의 반력) ① 법 제38조의2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u> <u>1. 도매제공의무사업자(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도매제공의무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도매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협정 상대방에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u> <u>2.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협정 상대방에게 협정의 이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u> <u>3.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동일한 협정 상대방과 체결하여 이미 신고된 협정에서 정한 도매제공 대가의 산정 주기를 협정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변경하는 경우</u>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반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6641